## KOSHA GUIDE

## C - 34 - 2011

- (2)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및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고,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하여야한다.
- (3) 작업장 내에 전신주, 통신케이블 등 장애물 존재여부를 점검하고, 이에 대한 이설 또는 방호시설을 갖추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 전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 전에 보호구를 점검하여 불량 보호구는 폐기하고,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투입되는 장비는 작업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에 사용되는 전동기계·기구를 점검하여 불량기계·기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8) 가설통로, 비계, 작업발판 등 가시설물의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.

## 4.3 거푸집 동바리의 기초 검토

- (1) 동바리 형식인 경우에는 동바리의 설치지점인 지반 지내력을 검토하여 깔판, 깔목의 설치 또는 콘크리트 부설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(2) 보 형식인 경우에는 보 설치지점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
## 4.4 자재의 반입

- (1) 자재의 반입은 사용 순서 및 시기를 고려하여, 장기간 현장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 반입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적치장소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장비의 진출입로 및 작업장소는 작업 중 장비의 전도 또는 전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